

효성화학 주식회사

2021 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CREATIVITY

INSPIRED

CREATIVITY
INSPIRED
HYOSUNG

HYOSUNG CHEMICAL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목 차

I. 개요	1
II. 기업지배구조 정책	2
III. 주주	5
1. 주주의 권리	11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13
IV. 이사회	22
1. 이사회 기능	22
2. 이사회 구성	29
3. 사외이사의 책임	41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46
5. 이사회 운영	48
6. 이사회 내 위원회	52
V. 감사기구	58
1. 내부감사기구	58
2. 외부감사인	63
VI. 기타 주요 사항	70
<별첨>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및 기업 내부 규정	73

I 개요

(1) 기업명 : 효성화학 주식회사

(2) 작성 담당자 : (정) 권기준 차장(자금팀 / 02-2146-5332 / kjkwon76@hyosung.com)

(부) 민인영 대리(자금팀 / 02-2146-5336 / iymin@hyosung.com)

(3) 작성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4) 기업 개요

최대주주등	(주)효성 외 12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¹⁾	43.85%
		소액주주 지분율 ²⁾	45.07%
업종(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제품	PP, TPA, Film 등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미해당
기업집단명	효성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2021년	2020년	2019년
연결 매출액	24,530	18,172	18,125
연결 영업이익	1,486	609	1,539
연결 계속사업이익	704	(116)	878
연결 당기순이익	704	(116)	878
연결 자산총액	30,562	24,174	20,635
별도 자산총액	16,420	15,646	15,558

1)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기준 (2021.12.31)

2) 소액주주 지분율 : 최근 사업연도 말일 기준 (2021.12.31)

1. 기업지배구조 정책 현황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

당사는 이러한 가치체계에 따라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글로벌 일류 기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를 당사의 원칙과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2022년 5월 31일) 왕윤중 사외이사가 2022년 5월 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2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가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물색하여 추천합니다. 사외이사는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별도의 결의과정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되는 참고서류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고, 주주총회 당일에 주주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경영 기본 방침과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의결 및 이사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경영 기관으로,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사항은 정관 제31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되고 있으며,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기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는 이사회의 전략적인 판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각 이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내 최고 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 또한 필요합니다. 사외이사는 회계, 경영·경제, 법률 부문 등의 전문가로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경영을 감독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사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yosungchemical.com/kr/ir/the_board_of_directors.do),

사업보고서(<http://dart.fss.or.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2. 지배구조의 특징

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통한 투명성 강화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작성기준일 현재 60.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다각적인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사와 회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상법과 이사회 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운영하고 사외이사를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나. 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당사는 이사회 내 총3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회사 경영방침 및 투자 등에 관한 사항 등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 다양한 배경의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이사회 전문성 강화

당사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기 위해 이사진이 특정 배경에 편중되지 않도록, 회계·경영·경제·법률 등 여러 전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금융·회계·재무분야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업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지속가능경영 운영체계의 수립

당사는 기존 기업지배구조 내실화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며 기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사회·지배 구조에 관한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에 최고경영

진이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를 포함한 체계적인 지속가능경영 운영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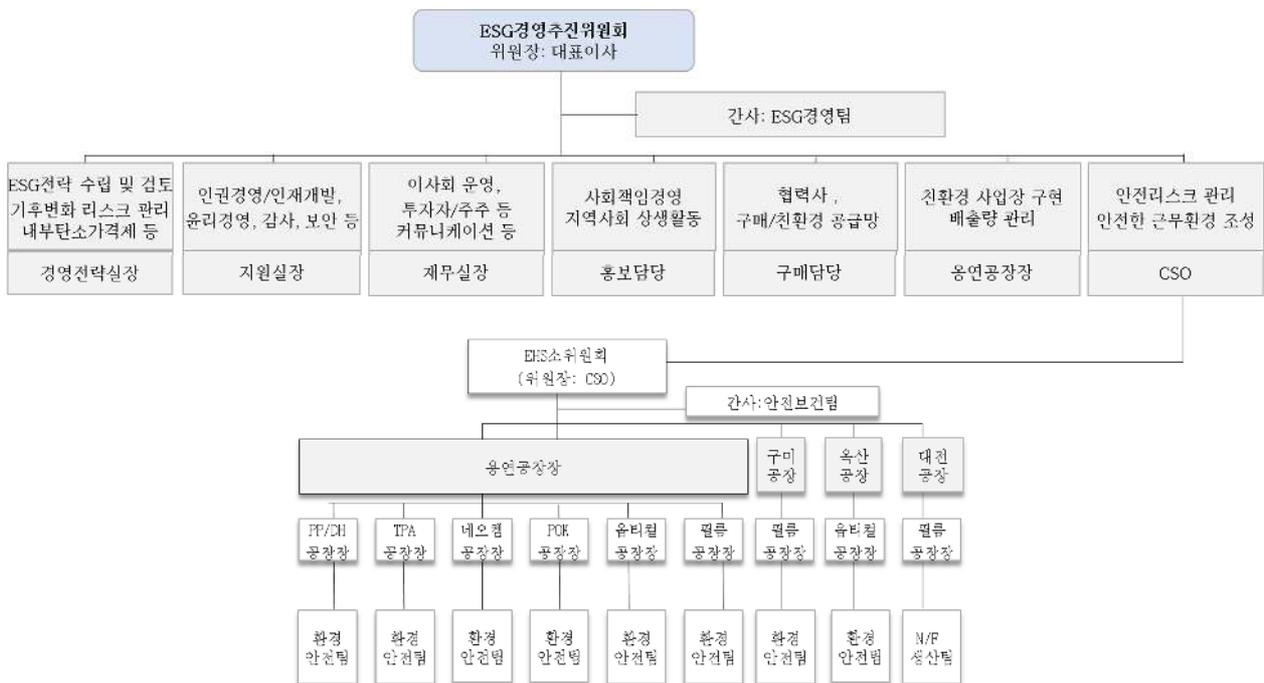
지속가능경영이 임직원의 일상업무 수행의 고려대상이 되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이 수행을 독려하고자 회사 최고경영진으로 구성된 ESG경영추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회사의 최고경영진은 본 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주요 안건을 의결합니다.

ESG경영추진위원회는 회사가 당면한 상황 및 변화 트렌드를 기반으로 향후 회사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논의해 결정하고, 이를 분야별 전문 위원회에 공유하여 실질적 변화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리 분야별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각 분야별 임원을 위원으로 구성해 매 분기별 정기회를 통해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실행 목표의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여 주요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효과적인 업무 추진 및 개선을 위해 위원들과 함께 개선 과제를 기획하고, 직접 실행을 추진, 모니터링 할 각 실무자가 분야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CSO: Chief Safety Officer, 최고안전책임자

1. 주주의 권리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법 제542조의 4에서는 주주총회일 2주 전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당사는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상기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개최되었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현황]

구 분	제4기 정기주주총회	제3기 정기주주총회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2년 2월 24일	2021년 2월 25일	2020년 2월 28일
소집공고일	2022년 2월 24일	2021년 2월 25일	2020년 3월 2일
주주총회개최일	2022년 3월 17일(목)	2021년 3월 18일(목)	2020년 3월 20일(금)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총 21일 전	주총 21일 전	주총 18일 전
개최장소/지역	본점/서울 서초구	본점/서울 서초구	본점/서울 서초구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	-	-

구 분		제4기 정기주주총회	제3기 정기주주총회	제2기 정기주주총회
세부 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여부	5명 중 2명 출석	5명 중 1명 출석	5명 중 2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여부	3명 중 1명 출석	3명 중 1명 출석	3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 주주 : 3인 (개인주주 3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의견 발언	1) 발언 주주 : 2인 (개인주주 2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의견 발언	1) 발언 주주 : 3인 (개인주주 3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의견 발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주주들에게 제공된 정보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 등이며 회의 목적사항은 보고사항(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과 부의사항(재무제표 승인, 이사선임, 감사위원 선임, 정관변경,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이었습니다.

또한 소집공고 서류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이사회 출석을 및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의 활동내역 포함)과 사외이사 보수 현황을 기재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사항으로서 단일거래규모가 자산 또는 매출액의 1% 이상 거래 및 거래 총액이 자산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인 거래 내역을 기재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개요에서 업계의 현황과 회사의 현황, 시장점유율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등 주주총회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총회 관련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2주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당사는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18일에서 21일 전에 사전 공고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기업지배구조모범기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최대한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 및 참석률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게 하고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개최된 주주총회의 분산개최 여부 및 주주 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4기 정기주주총회 (최근년도)	제3기 정기주주총회	제2기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2.03.25, 2022.03.30, 2022.03.31	2021.03.26, 2021.03.30, 2021.03.31	2020.03.13, 2020.03.20, 2020.03.26, 2020.03.27
정기주주총회일	2021.03.17	2021.03.18	2020.03.20
정기주주총회 분산개최 여부	해당	해당	미해당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전자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예	예	예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개최되었던,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내역]

(단위 : 주)

정기		제4기 주주총회			2022. 3. 17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1)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A) 2)	찬성 주식수 (B) (비율, %) 3)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4)
제1호 의안	보통	제4기(2021.01.01 ~ 202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177,795	2,004,992	1,961,468 (97.83%)
						43,524 (2.17%)
제2호 의안	보통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3,177,795	2,004,992	2,004,992 (100.00%)
						-

제3호 의안	제3-1 호	제3-1-1호	보통	사내이사 이건중 선임의 건	가결	3,177,795	2,004,992	1,960,565 (97.78%) 44,427 (2.22%)
		제3-1-2호	보통	사내이사 이천석 선임의 건	가결	3,177,795	2,004,992	2,003,983 (99.95%) 1,009 (0.05%)
	제3-2 호	제3-2-1호	보통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편호범 선임의 건	가결	1,912,168	741,729	718,759(96.90%) 22,970 (3.10%)
								1,993,633(99.40%) 11,359 (0.60%)
	제3-3 호	제3-3-1호	보통	사외이사 왕윤중 선임의 건	가결	3,177,795	2,004,992	1,615,493(80.57%) 387,499(19.43%)
		제3-3-2호	보통	사외이사 이창재 선임의 건	가결	3,177,795	2,004,992	
제4호 의안	제4-1호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왕윤중 선임의 건	가결	1,912,168	741,729	732,972 (98.80%) 8,757 (1.20%)
	제4-2호							보통
제5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3,177,795	2,004,992	

[제3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내역]

(단위 : 주)

정기	제3기 주주총회				2021. 3. 18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1)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A) 2)	찬성 주식수 (B) (비율, %) 3)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4)
제1호 의안	보통	제3기(2020.01.01 ~ 2020.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177,795	2,140,511	2,095,923 (97.92%) 44,588 (2.08%)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3,177,795	2,140,511	2,140,511 (100.00%) 0 (0.00%)
제3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3,177,795	2,140,511	1,938,771 (90.58%) 201,740 (9.42%)

1) 감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기재

2) 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3) 찬성 주식수 비율(%) = (B/A) × 100

4)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 100

나.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조치한 사항

당사는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2기 정기주주총회는 사전에 계획된 연간 주요 경영활동 일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으나, 제3기 및 제4기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여 보다 많은 주주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다 많은 주주가 참석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최대한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 및 참석률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게 하고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권유자인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시 필요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도록 권유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권유문서 등의 내용을 권유행위 2영업일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개최되었던 주주총회 2건(정기 2건)에서 평균 65.3%(제4기 63.1%, 제3기 67.4%)의 참석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주주분들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주의 의견을 경청하여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제안권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까지는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았고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주제안 절차의 회사 홈페이지 안내 및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사내 기준 및 절차 수립 등을 검토하여 주주와 당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 관련, 주주제안 및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상황]

제안 일자	제안 주체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여부	찬성율(%)	반대율(%)
해당사항 없음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회신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음				

나.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서 규정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의 처리는 당사 자금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와 같이, 당사는 여러 주주분들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경청하고자, 주주제안권 처리 기준 및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주들이 용이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사항을 살펴보고 검토하여 주주와 당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추구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사는 주주 친화 정책 강화를 위해 연간 1회로 집중된 결산 배당을 분산시켜 배당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주주들의 실질 배당수익률을 제고하고자

2018년 4월 27일 (주)효성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통한 당사 정관 제정 시 상법 제 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중간배당에 대한 계획은 없으나, 추후 주주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하겠습니다.

당사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VOC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 개선 및 고객만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과 함께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및 관련 정보 안내에 관한 사항

당사는 향후 투자계획과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규모가 결정되는 관계로 배당 규모를 정하는 기준 및 장기적 배당 계획 등과 관련된 배당 정책을 주주에게 안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배당 관련 정보를 주총 2주 이상 전에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주주대상 현금 배당 통지서 서면발송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의 배당 계획 및 실시 사항을 안내하는 등 주주들에게 회사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웹사이트(http://www.hyosungchemical.com/kr/ir/stock_price_index.do)에서는 배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배당정보 안내와 관련하여 미비한 부분은 꾸준히 보완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최근 3년간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에 대해 실시한 적이 없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 내역]

(주, 원, %)

사업 연도	결산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주당 배당금 ¹⁾	총 배당금	시가 배당률 ²⁾	배당성향 ³⁾	
							연결 기준	개별 기준
2021	12	보통주	-	-	-	-	-	-

2021	12	종류주	-	-	-	-	-	-
2020	12	보통주	-	-	-	-	-	-
		종류주	-	-	-	-	-	-
2019	12	보통주	-	5,000	15,888,975,000	3.4	18.1	17.2
		종류주	-	-	-	-	-	-

1) 사업연도별 지급액 총액

2) 주주명부 폐쇄일 2 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

3) 배당금총액 / 연결 or 개별 당기순이익

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한 조치사항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매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배당금은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현금흐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인적 분할로 인한 사업구조 재편 및 COVID-19의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국내 경기의 하향 흐름 등으로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최초 설립연도인 2019년 사업연도는까지 2년간 주당 배당액을 증액하였으나, 2020년, 2021년 사업연도는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주분들에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관한 사항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150,000,000주, 종류주 50,000,000주로 총 200,000,000주 (1주의 금액 : 5,000원)이며,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3,190,126주 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식발행 현황]

구 분	발행가능주식수 (주)*	발행주식수 (주)**	발행비율***	비고
보 통 주	150,000,000	3,190,126	2.13%	자기주식 12,331 주 보유
종 류 주	50,000,000	-	-	해당 사항 없음
합 계	200,000,000	3,190,126	1.60%	-

* 발행가능주식수 : 기준일 현재 수권주식수(정관상의 주식수)

** 발행주식수 : 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기준일 현재까지 감소(감자, 이익소각 등)한 주식의 총수

*** 발행비율 : 발행주식수/발행가능주식수 * 100(소수점 3 자리에서 반올림)

나.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는지 여부

당사는 별도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적이 없으며, 당사의 모든 주주는 보유 주식의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다. 주주와의 의사소통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매년 3월, 5월, 8월, 11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고 있으며, (주)효성 IR팀에 위탁하여 국내·아시아 지역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NDR (Non-Deal Road show)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가 개최하는 컨퍼런스 참가 및 방문 투자자 미팅, 컨퍼런스콜, 야드 투어 등 다양한 IR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 경영진이 직접 투자자와 미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IR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그룹차원의 Conference, 기술 세미나, CEO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내용에 대한 실적 발표를 통해 사업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 진행된, 주주와의 의사 소통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일 자	대 상	형 식	주요 내용	비고
2022.05.03 ~ 05.04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NDR(신한금융투자)
2022.02.07 ~ 02.10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1년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NDR(키움증권, 신영증권)
2021.11.01 ~ 11.09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1년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NDR(이베스트증권, 신영증권)
2021.08.02 ~ 08.05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1년 2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NDR(하이투자증권, DB금융투자)
2021.05.10 ~ 05.11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NDR(키움증권)
2021.05.03 ~ 05.04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NDR(하나금융투자)
2021.04.06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0년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NH증권 컨퍼런스
2021.03.30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0년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KB증권 컨퍼런스
2021.03.24	해외 기관투자자	IR	2020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1년 전망	Credit Suisse 컨퍼런스
2021.02.03 ~ 04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0년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NDR(이베스트증권)
2021.02.01 ~ 02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0년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NDR(대신증권)

[소액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일 자	대 상	형 식	주요 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소액주주와의 대화를 별도로 개최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IR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어 일평균 2~5회 소액주주와의 소통이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IR문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02-707-7748)와 이메일 주소(hs486@hyosung.com)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일부 공시의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으며, 외

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중문 홈페이지를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한 구성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문공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당사가 직접 작성하여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이용하여 제출한 영문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문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영문)	주요 내용(한글)
2021.03.24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제3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2021.04.08	Decision on Debt Guarantee for Others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2021.04.08	Decision on Debt Guarantee for Others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2021.05.03	Decision on Debt Guarantee for Others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당사는 주주에게 충분한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공정한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위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 진행된, 당사의 공정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21.01.29	연결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0년 4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연결 잠정실적
2021.04.30	연결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1년 1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연결 잠정실적
2021.07.30	연결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1년 2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연결 잠정실적
2021.10.29	연결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1년 3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연결 잠정실적
2022.01.26	연결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1년 4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연결 잠정실적
2022.04.27	연결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2년 1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연결 잠정실적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그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 벌점	제재금	지정 후 개선노력 등
해당사항 없음					

라.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충분·공평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및 향후 계획

당사의 기업정보는 회사 홈페이지(<http://www.hyosungchemical.com>)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dart.fss.or.kr>)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높아지는 주주들의 정보 요구 수준에 맞추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IR 자료를 제공하여 주주들의 이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용의 충실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기업지배구조, 재무·IR·공시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문의란에 IR관련 문의를 별도로 마련하여 IR 담당자에게 메일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실적발표회 자료 등의 다운로드가 가능토록 하여 주주의 정보 습득이 용이하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기업 정보 열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영문 공시를 제출하고 있으며, 영문·중문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가. 내부거래·자기거래 관련 통제정책 및 향후 계획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상법 제398조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안건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득하고 있으며, 승인요건은 재적인원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재적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50억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을 득한 뒤, 공시하고 있으며, 특히, 상법 제542조의9에서 규율하는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최대주주인 (주)효성, 그 특수관계인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규모가 자산총액/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건당 거래규모가 자산총액/매출액의 1% 이상인 경우의 거래내역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고, 매년 정기주주총회에 해당거래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상기의 내부거래 통제장치에 따라 진행된, 2021년 사업연도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년말 기준 당사와 특수관계인간 채무보증 및 담보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대상자	관계	채권자	채무내용	채무보증 및 담보	거래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	계열회사	산업은행 외	시설자금 외	채무보증	1,082,540	462,289	-	1,544,829
합 계					1,082,540	462,289	-	1,544,829

1) 당기말 현재 회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의 내역은 없습니다.

(2) 2021년 기준 당사와 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사명	자금차입 거래		현금 출자	지분 취득
		차입(주 1)	상환(주 1)		
기타특수관계자	(주)신동진	37	2,239	-	-
	공덕개발(주) ³⁾	-	500	-	-
	소 계	37	2,739	-	-
기타	효성티앤씨(주) ⁴⁾	-	515	-	-
	케이비와이즈스타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제 11호	113	29	-	-
	소 계	113	544	-	-
합 계		150	3,283	-	-

(주 1) 사무실 등의 리스계약에 따라 당기에 추가로 인식한 리스부채는 150 백만원이며, 리스부채의 상환금액은 3,283 백만원입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영업 거래 내역 및 채권·채무 잔액

-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2021년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의 거래 내역과 2021년말 기준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사명	매출 등 ¹⁾	배당수익	매입 등 ¹⁾	유·무형 자산 취득	사용권자산 취득	이자비용 ²⁾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효성	6	-	125,176	-	-	-

(기준일 : 2021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구분	회 사 명	매출 등 1)	배당수익	매입 등 1)	유·무형 자산 취득	사용권자산 취득	이자비용 2)
종속기업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	4,160	-	22	-	-	-
관계기업	신화인터텍(주)	11,869	291	113	-	-	-
기타특수관계자	(주)신동진	-	-	97	-	37	55
	공덕개발(주)	-	-	8	-	-	6
	효성트랜스월드(주)	-	-	5,310	-	-	-
	Hyosung Holdings USA	7,208	-	32	-	-	-
	기타	-	-	915	-	-	-
	소 계	7,208	-	6,362	-	37	61
기타	효성티앤씨(주)	224,615	-	94,542	-	-	-
	효성중공업(주)	-	-	429	13,309	-	-
	효성첨단소재(주)	-	-	356	-	-	-
	Hyosung Japan Co., Ltd.	53,683	-	18	-	-	-
	Hyosung NEW Material & High Technology(Quzhou) Co., Ltd.	8,523	-	-	-	-	-
	Hyosung International(HK) Ltd.	13,307	-	-	-	-	-
	Hyosung Chemical Fiber(Jiaxing) Co., Ltd.	4,209	-	35,824	-	-	-
	기타	2,191	-	6,461	-	115	1
	소 계	306,528	-	137,630	13,309	115	65
합 계		329,771	291	269,303	13,309	152	126

1) 매출 등에는 매출, 기타수익, 이자수익 등이, 매입 등에는 원재료 매입, 판관비, 기타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건물 등의 리스계약에 따라 당기에 인식한 이자비용은 126 백만원입니다.

(기준일 : 2021 년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구분	회 사 명	매출채권	기타채권 등 1)	매입채무	기타채무 등 1)	리스부채 2)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효성	-	52	342	26,637	-
종속기업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	886	27,624	-	-	-
관계기업	신화인터텍(주)	1,417	-	-	-	-
기타특수관계자	(주)신동진	-	1,122	-	-	2,444
	공덕개발(주)	-	151	-	-	360

(기준일 : 2021 년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구분	회 사 명	매출채권	기타채권 등 1)	매입채무	기타채무 등 1)	리스부채 2)
	효성트랜스월드(주)	-	-	-	35	-
	Hyosung Holdings USA	2,647	-	-	2	-
	기타	-	-	-	184	-
	소 계	2,647	1,273	-	221	2,804
기타	효성티앤씨(주)	22,648	524	9,144	935	1,880
	효성중공업(주) ³⁾	-	-	242	6,623	-
	효성첨단소재(주)	-	366	38	-	-
	Hyosung Chemical Fiber(Jiaxing) Co., Ltd.	1,787	-	7,743	-	-
	Hyosung Japan Co., Ltd.	921	-	10	-	-
	Hyosung NEW Material & High Technology (Quzhou) Co., Ltd	499	-	-	-	-
	Hyosung Chemicals(Jiaxing) Co., Ltd.	656	18	-	-	-
	기타	1,922	8	-	1,044	149
	소 계	28,433	916	17,177	8,602	2,029
합 계	33,383	29,865	17,519	35,460	4,833	

- 1) 기타채권에는 미수금, 선급금, 예치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채무에는 미지급금, 예수보증금, 복구충당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건물 등의 리스계약에 따라 인식한 리스부채의 당기말 잔액은 4,833 원입니다.
- 3) 회사는 효성중공업(주)에 대한 회원권 6,000 백만원을 회원권으로 자산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된 2021 년 기준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일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인 거래

(기준일 : 2021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 (해외계열회사) 채무보증		2021.01.29 ~ 2022.01.29	784	5.01%
		2021.02.03 ~ 2022.02.07	706	4.51%
		2021.05.07~2022.05.07	168	1.07%
		2021.06.11~2022.06.11	946	6.05%
		2021.07.01 ~2023.07.01	509	3.25%
		2021.08.24~2022.08.24	193	1.23%
		2021.09.15~2022.09.14	469	3.00%

(기준일 : 2021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2021.10.14~2022.10.14	238	1.52%
		2021.11.01~2022.11.01	420	2.68%
		2021.11.17~2022.02.07	283	1.81%
		2021.12.13~2022.11.08	471	3.01%

1) 비율(%)은 2020 년말 별도 자산총액(1 조 5,646 억원)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 해당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거래

(기준일 : 2021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효성티앤씨(주) (국내계열회사)	매입·매출	2021.01.01~2021.12.31	3,197	20.43%
(주)효성 (국내계열회사)	매입	2021.01.01~2021.12.31	1,252	8.00%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 (해외계열회사)	채무보증	2021.01.01~2021.12.31	5,173	
	매출	2021.01.01~2021.12.31	42	
	합계		5,215	33.33%

1) 비율(%)은 2020 년말 별도 자산총액(1 조 5,646 억원)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세부원칙 2-③)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경우, 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회사 정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된 내용 및 향후 계획 등

당사는 2021년 8월 나일론필름 증설계획에 따라 신규 법인 Hyosung Film(Quzhou) Co., Ltd 를 설립을 2022년 1월 6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2022년 1월 14일 경영위원회에서 Hyosung Film(Quzhou) Co., Ltd 에 대한 효성화학(주)의 100%출자를 결의하였으며, 1 차 자본금 \$20 백만불(2022.01.14) 및 2 차 자본금 \$ 20 백만불(2022.05.17)을 납입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상법 제 522 조의 3 및 제 527 조의 3 제 4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소규모합병 시 합병 반대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할 시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회사 정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1. 이사회 기능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효과적 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 등에 관한 사항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법령 및 정관 상에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규정된 주요사항, 일정 금액 이상의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중장기 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내 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당사 정관 제31조,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제11조의4에 규정되어 있는 이사회 의 구체적인 심의 및 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승인 사항
상법 및 정관상의 이사회 결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기타 법령,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 위원회에서의 위임이 금지된 사항
이사회운영규정상 경영위원회에 위임한 결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일반공모증자, 우리사주발행, 주식예탁증서발행 등에 의한 신주발행 및 실권주, 단주의 처리포함) -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구 분	승인 사항
이사회운영규정상 경영위원회에 위임한 결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우선주식의 이익배당방식, 우선배당을 결정, 보통주로의 전환사항 등 포함)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중요한 회사규정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 지점, 공장, 영업소, 출장소, 현지법인 등의 설치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본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나. 이사회에 경영감독 기능 및 의사결정 기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과 제542조의11 상 규율하고 있는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상장회사이나,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에 의해 감사위원회(사외이사 100%)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67%)를 설치하고 있는 등 법령에서 규율한 기준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상법 제542조의9에서 별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일정 요건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에 승인을 받고 처음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하는 사항을 당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7조를 통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사업연도말 1회 보고의무)를 연2회(반기말·사업연도말) 보고하는 등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에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외 효율적인 회사의 업무수행과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해 관계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의4 제2항에 회사 경영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경영위원회에 위

임 하고 있는 동시에 경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이사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매분기 경영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에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에게 필요한 경영 역량을 “지속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 Profit Design을 할 수 있는가” 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육성하기 위해 재직 임원 대상으로는 임원 단기 MBA 프로그램을, 임원 후보자 대상으로는 GMC(Global Management Course) 임원 후보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GMC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 인력 중 임원을 선발하고, 이렇게 선발된 임원은 MBA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는 이렇게 관리되는 임원 중에서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 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상법 제389조, 정관 제28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 영역별 다양한 후보군을 선발·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관 제29조에 따라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여 최고 경영자의 유고 등 비상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에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관련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내부 프로세스를 규정화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 등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및 노력하겠습니다.

당사가 공시대상기간 동안 진행한 임원 대상 교육 현황 및 임원 후보자 대상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대상 교육 현황]

일시	구분	참석인원	교육내용	비고
2021.3.19 ~7.10	사내	100	Semi MBA : 경영역량 향상 및 환경변화 대응	2개 그룹 운영

※ (주)효성 및 계열사 임원(효성화학(주)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기준입니다.

[임원 후보자 대상 교육 현황]

일시	구분	참석인원	교육내용	비고
2021.4.23 ~ 7.23	사내	31	주요 경영기능의 이해 (전략경영, 마케팅, 회계,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비대면 교육

※ (주)효성 및 계열사 임원(효성화학(주)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기준입니다.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내부통제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의 내부통제정책은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인 제도, 행동규범, 내부 통제체계, 주요 업무별 유의사항, 준수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정책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 및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를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에 대해 회사 내부적으로 리스크관리매뉴얼, 준법통제기준, 투자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보안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황 및 정책 환경 등의 대내외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1) 리스크관리

당사는 경영활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 및 대내외적 위험과 기회 등을 리스크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①재무 리스크, ②사업연속성 리스크, ③경영 리스크로 구분하여 리스크의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에 따라 주요 리스크를 도출하고, 주요 리스크의 원인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분	정의	관리현황
재무 리스크	유동성, 주가, 환율변동 등 재무적 요소와 연관된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의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내 사업부 및 해외 종속회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기적으로 재무위험의 측정, 평가 및 헷지 등을 실행 - 시장위험의 예측과 위험자산의 환변동 등에 따른 실적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 - 국내외 투자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장정보를 이용한 시장위험에 대한 예측, 관리, 분석, 보고 등의 업무
사업연속성 리스크		
공급망 리스크	원재료 수급 및 생산 연속성 확보 실패 등으로 인한 제품 납기 지연 리스크 및 협력사의 사회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부재료 공급업체 대상 IATF16949, ISO14001에 준하는 정기평가 및 품질, 환경 감사 - 원부재료 공급 중단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및 훈련을 통한 대응력 제고 - 고객 공급 비상사태 정의 및 시나리오별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및 훈련을 통한 대응력 제고

	환경 관련 이슈 리스크	- 협력사 ESG역량 제고 및 정기적인 평가
재난·안전 리스크	지진, 화재, 폭발 등 재난 발생 또는 작업장 내 안전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전사 안전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 운영 - 재해 및 안전사고 비상대응 조직 구축, 시나리오별 매뉴얼 및 복구 조치사항 마련 - 화재, 폭발 등 사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민관합동 훈련 - 공장 숲 직원 대상 매년 사고사례 교육, 위험물 취급법 교육 실시 - 공장 환경안전전담 조직을 통해 상시 공장 안전 순찰점검 실시
구분	정의	관리현황
환경 리스크	온실가스 및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 규제에 대한 부적합한 대응으로 인한 법적 제재 및 벌금 발생의 리스크	- 환경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 운영 -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국가 폐기물배출 시스템 활용을 통한 폐기물 처리 및 국가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보고 - 화학물질 및 폐수 유출 등 사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훈련 - 공장 환경안전전담 조직을 통해 상시 공장 순찰점검 실시
기후변화 리스크	배출량 관련 규제 리스크, 물리적 리 스크 및 관련 사업 전환 리스크	- 기후변화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 운영 - 관련 법규 변화 모니터링 - 1.5도에 부합하는 감축목표의 수립 및 이행 관리 - 온실가스배출량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법률 및 준법 리스크	불리한 계약체결 및 소송 관련 리스크, 불공정거래 부정부패 횡령 등의 준법 리스크	- 계약심사규정 준수 및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통한 리스크 예방 - 외환, 특허, 계약관리 등 현업실무교육을 통한 이해도 향상 및 소송사건 사례 전파를 통한 인식 제고 - 청탁금지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윤리경영사례 등 교육 - 입사자 전원 윤리경영서약서 작성을 통한 인식 제고 - 제보하기 시스템 운영
인권 리스크	인권침해 리스크, 인적자원 관리 리스크 등	- 주기적인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및 개선 추진 - 인권방침 및 지침의 제정 및 배포 - 인권보호, 차별금지 등 교육의 주기적 실시 - 제보하기 시스템 운영
경영 리스크		
보안 리스크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테러 혹은 내부 데이터 유출에 따른 정보 분실 발생 등의 리스크	- 보안규정 및 운영기준 수립, 보안 전담조직 운영 - 문서중앙화 시스템(ECM)을 통한 Knowledge Management - 보안솔루션 복합기 도입, 전용 USB 사용 등 문서의 생성, 수정, 반출입 및 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 정보보안 10대 수칙, 사내 보안가이드 정기적인 교육, 월 1회 이상 별도 IT 보안 교육 실시
법률·윤리 리스크	사업에 불리한 계약체결 및 소송 또는 불공정거래 부정부패 등의 리스크	- 계약심사규정 준수 및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통한 법률리스크 예방 - 외환, 특허, 계약관리 등 현업실무교육을 통한 이해도 향상 - 계약체결 현황 및 소송사건 사례 취합 및 전파를 통한 인식 제고 - 청탁금지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윤리경영 사례 등 교육, 입사자 전원 윤리경영서약서 작성을 통한 인식 제고
평판 리스크	오보 또는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등의 리스크	- 입사자, 승격자, 신입 팀장 대상 PR 리스크 대응 교육 실시 - 홍보담당자 대상 행동원칙 및 행동프로세스 수립 및 교육 - 사례교육 실시를 통한 인식 제고
이해관계자 리스크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및 대민/대관 리스크	- 부문별 전담 부서를 통한 관리 - 이슈 발생 시 처리 프로세스의 구축
경영	담당자 혹은 시스템 오류로	- ERP(전사자원관리)를 활용하여 경영 제반 활동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관리

일반 리스크	인한 운영상의 리스크	- C-Cube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VOC의 관리 및 고객만족도 향상
-----------	----------------	---

(2) 준법경영

당사는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상법 제542조의 13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의 준법여부 및 회사경영활동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한편, 전사 또는 조직별 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연 1회 이상 주요 활동 내역 및 그 처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준법지원활동을 통하여 당사의 조직 및 사업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규정” 제정하여, 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2021년 주요 보고 내용으로는 ①회사 설립 시 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3차) 후 사내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인식 제고와 ②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 주요 법률 내용과 범위반 사례 등 윤리교육을 본사 및 공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 및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상적인 준법지원을 위해 상시적인 법률자문 업무와 계약서 사전심사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주요 법률 제·개정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적 Risk를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준법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전사수준 / 프로세스수준 / 일반 전산수준의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7조에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동 실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연 2회 이사회에 대면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보고 및 평가 등을 반영하여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2019년 1월에 개정하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고도화 TFT 및 내부회계관리담당 TFT를 신설 및 운영하여 적극적인 관리 및 통제체계를 운영하며 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관리

또한 당사는 규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시담당부서와 사업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적시성 있고 정확한 공시 수행과 모니터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내 전자품의 공통양식 내 공시해당 여부를 작성자가 확인하고 해당되는 사항일 경우, 공시담당자를 필수 회람하게끔 함으로써 공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관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지주회사인 (주)효성에서 운영하는 “효성기업집단 공시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공시자료 작성 및 검토를 하여 기재사항 오류 등을 지주사와 Cross Check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및 상장사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수시 및 정기교육에 참석하여 법규정 개정에 따른 공시서식 및 공시의무의 변경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회사 이익창출의 근본이 되는 투자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투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의 계획·집행·관리 및 결과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자본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투자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자산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각종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구성

(핵심원칙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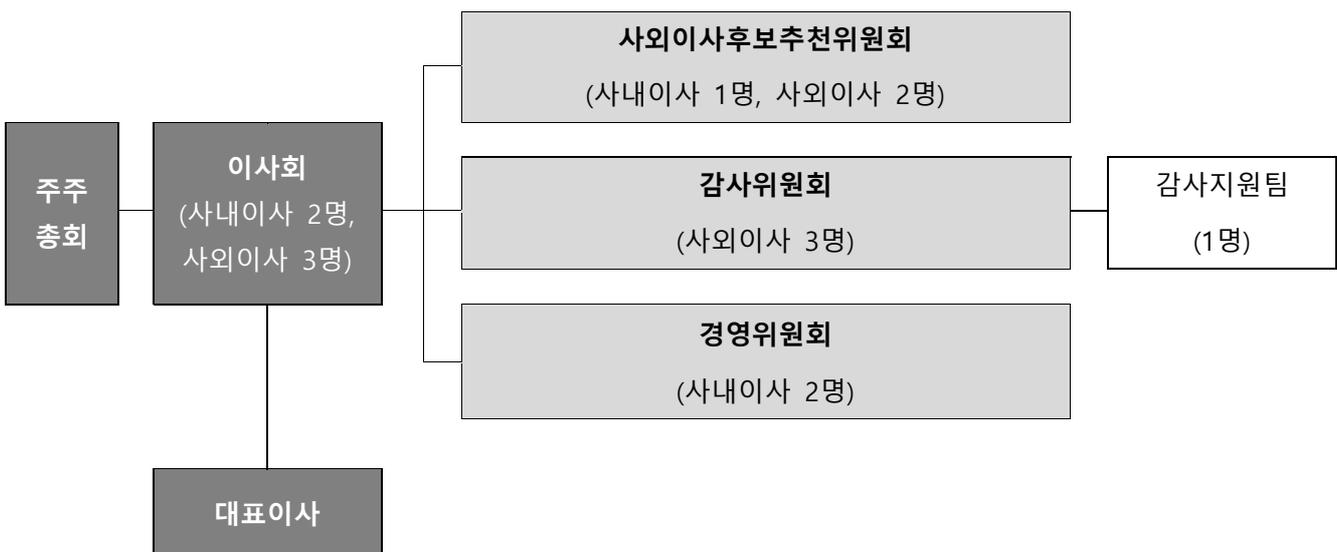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가. 이사회 구성 현황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4조에 따라 3명 이상 16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최소 인원을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383조 1항에 따라 최소 이사 원수를 반영한 것이고, 최대 인원을 16명으로 구성한 것은 다양한 사업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다수의 이사의 필요성과 이사 간 의견 수렴의 지연 문제 등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절충하는 안입니다.

[효성화학(주) 이사회 관련 조직도]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3명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및 사외이사 3명인 총 5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2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며, 감사기능의 강화 및 연속성, 회사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의 경우 2018년 6월 최초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들은 모두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회계·경영·경제·법률 등 각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당사 이사회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되고, 현재 당사 이사회 의장은 2021년 3월 19일 개최한 호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건종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들만의 회의체인 사외이사회나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제출일(2022년 5월 31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성별	직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사내 이사	이건종	남 (65세)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경영위원회 위원	2020.03.20	2024.03.16	기업 경영	건국대 화학 학사/석사/박사 前) 삼성전자(주) LCD 제조센터장, (주)원익머트리얼즈 대표이사 現) 효성화학(주) 대표이사 및 Neochem PU장
	이천석	남 (55세)	경영위원회 위원	2022.03.17	2024.03.16	기업 경영	부산대학교 화학교육과 학사 KAIST 유기화학 석사/박사 前) '00년~'14년 삼성SDI 전자재료 연구소장, 전자재료사업부 마케팅/영업총괄 現) 효성화학(주) Optical Film PU장 겸 필름 PU장
사외 이사	편호범	남 (70세)	감사위원회 대표위원	2018.06.01	2024.03.16	회계 (교수)	성균관대 경영 학사 조지아주립대 MBA 성균관대 경영 박사 前) 감사원 감사위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구분	성명	성별	직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부회장 現) 수원대 회계학과 석좌교수 現) 효성화학(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왕윤중	남 (60세)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대표위원	2018.06.01	2024.03.16	경영, 경제 (교수)	서울대 경제 학사/석사 예일대 경제 박사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SK중국경영경제연구소 소장 前)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前) 동덕여대 국제경영학 교수 現)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現) 효성화학(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이창재	남 (57세)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2018.06.01	2024.03.16	법률 (변호사)	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대 행정법 박사 조지워싱턴대 법학 박사 前)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효성화학(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 1) 왕윤중 사외이사는 2022년 5월 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향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 2) 2022년 3월 17일 이천석 이사가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기존의 최영교 이사는 2022년 3월 17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
고 있습니다. 감사지원팀은 감사위원회 산하에 귀속시켜 각 소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3인) (A)	대표위원	사외이사	왕윤종	남	B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위원	사외이사	이창재	남	B		
	위원	사내이사	이건종	남	C		
감사위원회 (총 3인) (B)	대표위원	사외이사	편호범	남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임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위원	사외이사	왕윤종	남	A		
	위원	사외이사	이창재	남	A		
경영위원회 (총 2인) (C)	대표위원	사내이사	이건종	남	A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일반공모증자, 우리사주발행, 주식예탁증서발행 등에 의한 신주발행 및 실권주, 단주의 처리포함) 4.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6.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8.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우선주식의 이익배당방식, 우선배당을 결정, 보통주로의 전환사항 등 포함) 9.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회사규정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11. 지점, 공장, 영업소, 출장소, 현지법인 등의 설치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1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 14. 기타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본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위원	사내이사	이천석	남	-		

- 1) 왕윤종 사외이사는 2022년 5월 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향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 2) 2022년 3월 17일 이천석 이사가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기존의 최영교 이사는 2022년 3월 17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총 3명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0.0%이며 사외이사 3인은 모두 연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 효과적 의사결정 및 독립성 확보 여부

이와 같이, 당사 이사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며, 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 5명 중 3명이 사외이사(비중 60%)이고,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3명 중 2명이 사외이사이며, 사내이사로만 구성된 경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매달 사외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관련 전반적인 사항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는 이사회에 전략적인 판단은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각 이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는 사내 최고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참여 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사내이사의 경우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사내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후보자들 중에 전문성과 비전, 리더십 등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을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및 대표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정하고, 상법상 요건을 충족한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후보로 포함시킴에 따라 독립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2명의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이건종 사내이사는 (주)원익머트리얼즈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효성화학(주) 대표이사 및 Neochem PU장으로서 뛰어난 글로벌 역량과 경영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영 감각을 발휘하여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석 사내이사는 현재 Optical Film PU 및 필름 PU장으로 다년 간의 당사 근무 경험 및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가 성

장하는데 기여한 주요 경영진인 바, 회사 및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경영/기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제도를 통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각 이사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호범 사외이사는 수원대학교 회계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감사원 감사위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회계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왕윤종 사외이사는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SK중국경영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한 경영·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창재 사외이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한 법률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사 5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여부
사내 이사	이건종	2020.03.20	2024.03.16	2022.03.17	재선임	재직
	최영교	2018.06.01	2022.03.16	2022.03.17	임기만료	퇴임
	이천석	2022.03.17	2024.03.16	2022.03.17	신규선임	재직
사외 이사	편호범	2018.06.01	2024.03.16	2022.03.17	재선임	재직
	왕윤종	2018.06.01	2024.03.16	2022.03.17	재선임	사임
	이창재	2018.06.01	2024.03.16	2022.03.17	재선임	재직

- 1) 왕윤종 사외이사는 2022년 5월 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향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 2) 2022년 3월 17일 이천석 이사가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기존의 최영교 이사는 2022년 3월 17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 의 다양성 · 전문성 · 책임성 확보 여부 및 향후 계획

이사회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 또한 필요하기에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 기술, 회계, 경제, 법률 등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잡힌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성 사외이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내부정책 마련을 통해 이사회 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출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로 이사회 를 구성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내 · 사외이사 선임 을 위한 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 구성 및 활동현황

당사는 사내이사 선임의 경우,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사내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하고, 후보자들 중에 전문성과 비전, 리더십 등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여 이사회 의 추천 결의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폭넓게 구축되어 있는 후보군 중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당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지 및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지 등을 유관 부서와의 인터뷰 및 관련 서류의 면밀한 검증 등을 통하여 평가한 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의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2인의 사외이사와 1인의 사내이사(사외이사 비율 67%)로 구성되며, 후보 확정을 위한 위원회 내 토의 시에는 전문성 · 충실성 · 독립성 · 사회적 지명도 · 청렴도 등의 평가기준과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선임시기별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 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사 후보추천 및 선임과 관련한 프로세스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더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의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던 주주총회 시 제공되었던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비고
		구분	성명		
2022.02.24 (주총 21일전)	2022.03.17	사내	이건중, 이천석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 분야 2. 주된직업, 세부경력,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 (이사회)	-
		사외	편호범, 왕윤중, 이창재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 분야 2. 주된직업, 세부경력,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

1) 왕윤중 사외이사는 2022년 5월 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향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재선임 이사 후보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 후보와 관련한 정보의 구체성 확인 및 적합성 검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주주총회 약 2주 이상 전에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정관 제19조에 따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주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실무 경험과 전문성 등 이사로서 필요한 개인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및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 의견 반영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서 규정하는 소수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추천하는 이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처리는 당사 재무실 자금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이 주주제안으로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해당 추천 이사에 대한 확인 등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최근 3년간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는 없었습니다.

라. 이사회 후보 추천·선임 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당사는 이사회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설명	비고
이사회 후보 추천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제542조의8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만 운영 중(사내이사회 후보추천위원회 미운영) - 사내이사는 이사회에의 추천으로 후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은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나, - 사내이사 후보의 선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당사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되는 바, 사내이사 추천인으로 이사회를 활용하고 있음
집중투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제382조2에서 규정하는 이사회 선임 시 집중투표제에 대해, 정관상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은 이사회 선임 시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으나, - 집중투표제의 장단점, 시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함 - 이사회 후보 선정 과정에서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주주총회 소집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의 이사회 선임 시 주주들에게 제공되었던 자료에 재선임 사외이사의 과거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내역이 기재되어 있음 - 재선임 사내이사 활동내역은 제공되지 않으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재선임 사내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함께 공시토록 노력할 예정임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사회 후보추천 및 선임과 관련한 프로세스 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더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가. 임원 현황

등기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를 말하며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 미등기 임원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필요에 따라 소관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

은 담당 임원을 말하며, 그 현황은 매 분기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은 32명으로 등기 임원(5명)과 미등기 임원(27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임원 현황(미등기 임원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현황(미등기 임원 포함)]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이건종	남	부사장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및 Neochem PU장
이천석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Optical Film PU장
최영교	남	전무	등기임원	상근	효성 비나케미칼즈 법인장
윤장효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PP/DH PU장
양생환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필름PU장
윤보영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재무실장
조성민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POK사업단장 및 구매 담당
김기영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PP/DH PU 용연공장장
최형식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홍보 담당
김성균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Optical Film PU 옥산공장장
공명성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Optical Film PU 영업 담당
여구현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필름PU 용연공장장
박용철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NeochemPU 소재연구소장
송규탁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효성 비나케미칼즈 LPG사업 담당
김종해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취저우 Project 총괄
장은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전략실장 및 지원실장
박성열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PP/DH PU 영업 담당
이근우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PP/DH PU 영업 담당
김종기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효성 비나케미칼즈 DH/LPG Terminal 담당
박계만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효성 비나케미칼즈 건설 담당
이시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효성박막(취저우)유한공사 총경리
황성훈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효성 비나케미칼즈 영업 담당
차경용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효성 비나케미칼즈 PP 담당
조정일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PP/DH PU 용연 DH 및 생산기술 담당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이정훈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효성 비나케미칼즈 재무 담당
조준호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효성 비나케미칼즈 LPG 및 내수 담당
이용호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PP/DH PU 영업 담당
김후원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Optical Film PU 옥산공장장
권철현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NeochemPU 용연공장장
이창재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편호범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왕윤중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2) 왕윤중 사외이사는 2022년 5월 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향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나.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한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정책

당사는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 기준을 제시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을 위해 '윤리강령'과 실천적 세부 지침을 담고 있는 '실천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준법 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법령 준수 및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진행하여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전사 임직원의 윤리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HR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의 직속 기구인 HR 상담실을 통해 임직원들은 업무 과정에서의 고충 사항에서부터 성희롱, 횡령, 인사 부정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중 비윤리적인 행위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팀에서 해당 건을 인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 감사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 현장 업무에서부터 각종 제보에 대한 조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활동 등을 통해 당사는 회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건전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회사의 금품을 횡령, 절취, 사취, 유용,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한 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태만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등 기업가치의 직접적인 훼손 또는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확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 성적 평정 및 각종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과거에 횡령·배임 경력이 있는 자는 신규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임원을 영입하는 경우에도 여러 차례의 심층 인터뷰, 평판 조회 등을

통해 해당 후보자가 과거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의 침해 관련한 이력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 임원은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등기 임원의 기업가치 훼손 등 사안에 대한 판단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실행하게 됩니다.

다. 횡령·배임·불공정거래행위로 확정판결 또는 혐의 있는 자의 임원선임 여부

당사의 경우 과거 횡령·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현재 횡령·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당사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집행임원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 결정 및 감독은 상호 연관성이 높아 분리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동일 주체인 이사회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책임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와의 당사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재직 중인 사외이사와 당사·계열회사 등과의 관계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사외이사와 당사 간에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재직 중인 사외이사와 기업·계열회사 등과의 관계]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 한 내용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편호범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왕윤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창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 1) 왕윤중 사외이사는 2022년 5월 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향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자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내역, 특별한 이해관계 등의 여부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자와 인터뷰 및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해 내부 검토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장기재직(6년 이상, 계열회사 포함 9년) 사외이사 존재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재직 중인 사외이사 각각의 재직 기간과 관련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 사외이사 3인 모두 재직기간이 4년으로서 장기재직(6년 이상, 계열회사 포함 9년)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재직 중인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및 6년 초과 장기 재직 시 그 사유]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시	
	재직기간	6년 초과 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 시 그 사유
편호범	4년	-	4년	-
왕윤종	4년	-	4년	-
이창재	4년	-	4년	-

1) 왕윤종 사외이사는 2022년 5월 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향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다. 사외이사의 선임 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와 재직중인 사외이사와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관련 자료를 통한 결격 요건 검증 뿐만 아니라, 법무·인사 등 관련 부서의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및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하여 상법이나 공직자 윤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 중인 사외이사 자격 요건은 물론, 전문성·직무공정성·윤리책임성·충실성 등의 자격요건을 충실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임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 시부터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선발 요건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 선임 시 상법 상의 '사외이사 독립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이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이해관계가 없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하여 상법상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상법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

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사회 내 위원회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의 미팅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당사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중인 사외이사 겸직 현황]

성명 (감사위원)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현 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편호범 (감사위원)	2018.06.01	2024.03.16	수원대학교 회계학과 석좌교수	-	-	-	-
왕윤중 (감사위원)	2018.06.01	2024.03.16	국가안보실 국제안보비서관	-	-	-	-
이창재 (감사위원)	2018.06.01	2024.03.16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

1) 왕윤중 사외이사는 2022년 5월 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향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나.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 여부 및 향후 계획

사외이사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사회가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에 비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경영진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기에, 사외이사의 위상 및 역할 상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를 인지하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정기 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 그리고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가. 기업의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 정책 및 운영현황

회사는 이사회 지원부서 등을 통해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 세부내역을 先제공함으로써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의 경영정보 보고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무부서 외 모든 부서가 이사회 의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외이사 교육을 제공·안내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또는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 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으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이사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자금팀, 감사위원회 : 감사지원팀, 경영위원회 : 경영기획팀)를 운영 중이며,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 소개·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의 사전 보고·회사 경영 정보의 제공 및 발송·기타 직무수행 시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신규 사외이사에 대해 회사의 사업구조, 경영실적 및 이사회·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사외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진이 국내·외 주요 사업장(계열사 포함)을 방문하여 사업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기별로 주요 사업의 현황 및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이 없습니다.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

회차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출석 사외이사 /전체 사외이사	회의 사항	비고
해당사항 없음					

나.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자원 등의 충분한 제공 여부

현재 당사는 이사회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하여 이사회 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에 대한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지원 부서는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질의응답, 추가사항 지원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사내 담당부서를 구성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실무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현황 조기파악 지원, 국내외 사업장 직접 방문 시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이사회 안건을 사전 설명하는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청사항에 관하여 정보와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들의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외이사들의 요청 및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 후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평가 및 향후 계획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업무 시 수반되는 책임과 역할·재임 기간 중 담당 업무관련 실적·이사회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견 개진(참여도)과 회의 출석률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의 정책상 사외이사 보수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외부 등을 통한 별도의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연동된 보수 산정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회사 내부 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재선임 시 참석률 및 활동내역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성·기여도·공정성 등의 항목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맞춰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88조, 정관 제26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 및 사외 이사 전체에 대한 보상 규모를 확정하고 있고, 사외이사의 경우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별도 보수는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 보수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의 보수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는 지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이와 연동된 보수 산정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상을 지급하게 되면,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직무 수행의 책임과 역할 등 만을 감안한 자체 보상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5. 이사회 운영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93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 이사회를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 제447조의3에 따른 주주총회 6주 전의 재무제표의 감사위원회 제출 및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승인 안건에 대한 이사회 사전 승인과 3월 정기 주주총회 소집 등을 고려하여 2월 주주총회소집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 주주총회 익일에는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위한 호선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기적인 이사회 승인 사항의 발생 또는 일정상 정기 이사회 부의가 어려운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이사회는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제8조에 따라 적어도 개최 1일전까지는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 시에는 이러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회의에 참여한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정관 제32조와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진이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안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개최일 2~14일 전에 안건을 통지하고 각 안건에 대한 사전 보고와 질의 응답을 실시하며, 이사들의 추가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개최일 전까지 성실히 지원하여 이사회 안건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던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및 사전 이

사회 소집 통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이사회 개최 내역]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1차	결의	제1호 제3기(2020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가결	정기	2021.01.29	2021.01.26	5/5
	결의	제2호 2021년 대규모내부거래 변경 승인	가결				
	결의	제3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가결				
	결의	제4호 2021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	가결				
	보고	제1호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보고	제2호 2020년 준법지원활동 결과 보고	보고				
	보고	제3호 2020년 4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보고				
2차	결의	제1호 제3기(2020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	가결	임시	2021.02.25	2021.02.22	5/5
	보고	제1호 2020년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보고				
	보고	제2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보고				
3차	보고	제1호 2021년 1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	보고	정기	2021.04.30	2021.04.26	5/5
	보고	제2호 2021년 1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보고				
	결의	제1호 대규모내부거래 변경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제2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4차	보고	제1호 2021년 2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	보고	정기	2021.07.30	2021.07.26	4/5
	보고	제2호 2021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	보고				
	보고	제3호 ESG경영 추진위원회 신설 보고	보고				
	보고	제4호 2021년 2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보고				
	결의	제1호 대규모내부거래 변경 승인	가결				
	결의	제2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가결				
5차	보고	제1호 2021년 3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	보고	정기	2021.10.29	2021.10.25	5/5
	보고	제2호 2021년 3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보고				
	결의	제1호 대규모내부거래 승인	가결				
	결의	제2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가결				

[2022년 이사회 개최 내역]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1차	결의	제1호 제3기(2021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가결	정기	2022.01.26	2022.01.21	5/5
	결의	제2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가결				
	결의	제3호 2022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	가결				
	보고	제1호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보고	제2호 2021년 준법지원활동 결과 보고	보고				
	보고	제3호 2021년 4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보고				
2차	결의	제1호 제4기(2021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임시	2022.02.24	2022.02.21	5/5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보고	제1호 2021년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보고				
	보고	제2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보고				
3차	보고	제1호 대표이사 선임의 건	보고	임시	2022.03.19	2022.03.14	5/5
	보고	제2호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보고				
	결의	제3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결의	제4호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4차	보고	제1호 2021년 1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	보고	정기	2022.04.27	2022.04.22	5/5
	보고	제2호 2021년 1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보고				
	결의	제1호 대규모내부거래 변경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제2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나. 이사회 정기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규정 마련 여부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상법 제393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이사회를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 회의일정을 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지하여 각 이사진이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들은 의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토의한 이후,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보존 여부

당사는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매 이사회 종료 후 각 안건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동 의사록에는 이사회 안건, 경과 요령,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 및 안건 찬성률

당사의 이사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5회,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4회 개최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총 41건의 안건(승인 19건, 보고 22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각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2021년 96.00%, 2022년 100%이며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비고
	개최일자	2021.01.29	2021.02.25	2021.04.30	2021.07.30	2021.10.29	
사내	이건중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최영교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사외	편호범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왕윤중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이창재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

[2022년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비고
	개최일자	2022.01.26	2022.02.24	2022.03.19	2022.04.27	
사내	이건중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최영교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2022.03.17 퇴임
	이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2022.03.17 선임
사외	편호범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왕윤중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이창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성명	구분	이사회 재직 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최근년도)	2020	2019		2021 (최근년도)	2020	2019
이건중	사내	2020.03.20 ~ 현재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최영교	사내	2018.06.01 ~ 2022.03.1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편호범	사외	2018.06.01 ~ 현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왕윤중	사외	2018.06.01 ~ 2022.05.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창재	사외	2018.06.01 ~ 현재	89.5	80.0	85.7	100.0	100.0	100.0	100.0	100.0

-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2) 최근 3개년 평균은 각 사업연도 출석률의 단순산술평균입니다.

6. 이사회 내 위원회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현황·역할 및 구성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의결사항 중에는 이사회 전원이 함께 검토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운영 중인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3개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현황 및 주요 역할,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동 보고서의 [IV. 이사회 ▷ 2. 이사회 구성 ▷ (세부원칙 4-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 내에 별도의 보상(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상(보수)위원회와 관련하여 향후 대내외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감사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구성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별 사외이사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별 사외이사 비율]

위원회명	총원 (사외이사 수)	비율	비고
감사위원회	3 (3)	100.0%	-

[이사회 내 위원회별 사외이사 비율]

위원회명	총원 (사외이사 수)	비율	비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2)	66.7%	-
경영위원회	2 (-)	-	

1) 왕윤중 사외이사는 2022년 5월 9일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진사퇴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 진행중이며,향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 3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3명중 2명 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4에 따라 위원 2명 전원이 사내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권한에 관한 명문규정 여부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총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하기 위원회별 개최내역 및 출석률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각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경영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이사회 시 분기별 결의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및 출석률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당사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3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3명의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 운영 현황 및 감사 보조 조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동 보고서의 [V. 감사기구 > 1.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상법 제393조의2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2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관계 법령 및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당사에 적합한 후보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에 의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2명의 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대표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것이 예상될 때마다 위원회가 소집되며, 공시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2021년 0회, 2022년 1회로 총 1회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고,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사외이사후보 추천 및 대표위원 선임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 추천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주총소집 안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해당사항 없음					

[2022년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차	2022.03.19	3/3	결의사항	제1호 대표위원 선임의 건	가결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재직 기간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최근년도)	2020	2019
사외	왕윤중	2018.06.01 ~ 2022.05.09	100.0	-	100.0	-
사외	이창재	2018.06.01 ~ 현재	100.0	-	100.0	-
사내	이건중	2020.03.20 ~ 현재	100.0	-	100.0	-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다) 경영위원회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제37조,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4 등에 따라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등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에서 이사회 부의가 명시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을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사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4에 따라 경영위원회는 상임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투자, 회사채 발행, 해외법인 출자, 차입금 지급보증, 금융거래 관련 건 등을 주로 안건 심의하고 있으며, 경영위원회 결의사항은 매분기 정기이사회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경영위원회 개최는 총 59회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6회,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25회 개최되었으며, 개최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차	2021.01.14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2차	2021.01.29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3차	2021.02.01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4차	2021.02.04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5차	2021.02.0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6차	2021.02.1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7차	2021.03.25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8차	2021.03.26	2/2	결의사항	투자 관련 건	가결
9차	2021.03.29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10차	2021.03.30	2/2	결의사항	2021년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승인의 건	가결
11차	2021.04.05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12차	2021.04.05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13차	2021.04.19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14차	2021.04.23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15차	2021.04.26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16차	2021.04.27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17차	2021.05.03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8차	2021.05.03	2/2	결의사항	투자 관련 건	가결
19차	2021.05.21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20차	2021.05.27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21차	2021.06.09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22차	2021.06.10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23차	2021.06.24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24차	2021.06.28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25차	2021.07.01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26차	2021.07.09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27차	2021.07.15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28차	2021.07.26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29차	2021.08.19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30차	2021.08.25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31차	2021.08.30	2/2	결의사항	투자 관련 건	가결
32차	2021.09.03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33차	2021.09.08	2/2	결의사항	투자 관련 건	가결
34차	2021.09.13	2/2	결의사항	투자 관련 건	가결
35차	2021.09.15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36차	2021.09.16	2/2	결의사항	투자 관련 건	가결
37차	2021.09.30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38차	2021.10.0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39차	2021.10.14	2/2	결의사항	설비구매 관련 건	가결
40차	2021.10.27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41차	2021.10.28	2/2	결의사항	투자 관련 건	가결
42차	2021.11.01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43차	2021.11.09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44차	2021.11.17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45차	2021.12.08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46차	2021.12.1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2022년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차	2022.01.10	2/2	결의사항	설비구매 관련 건	가결
2차	2022.01.12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3차	2022.01.14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출자의 건	가결
4차	2022.01.2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5차	2022.02.07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6차	2022.02.21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7차	2022.02.2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8차	2022.03.08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9차	2022.03.11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10차	2022.03.19	2/2	결의사항	대표위원 선임의 건	가결
11차	2022.03.25	2/2	결의사항	2022년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승인의 건	가결
12차	2022.03.26	2/2	결의사항	투자 관련 건	가결
13차	2022.03.31	2/2	결의사항	투자 관련 건	가결
13차	2022.04.04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14차	2022.04.13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15차	2022.04.14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16차	2022.04.15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17차	2022.04.15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18차	2022.04.22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19차	2022.04.25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20차	2022.04.27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21차	2022.04.28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22차	2022.05.02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지급보증 관련 건	가결
23차	2022.05.17	2/2	결의사항	투자 관련 건	가결
24차	2022.05.24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25차	2022.05.31	2/2	결의사항	금융거래 관련 건	가결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최근년도)	2020	2019
사내	이건종	100.0	100.0	100.0	-
사내	최영교	100.0	100.0	100.0	100.0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1.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계/재무 전문가 현황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 정관 제36조,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3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3명의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명기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 중 1인을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편호범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편호범 이사는 1982년부터 2007년까지 감사원에서 근무한 경력자로서 감사원 감사위원(2003년~2007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2007년~2015년),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2009~2017년)을 역임하며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로서 활동한 점을 고려할 때,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여,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감사위원들도 경영·경제·법률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당사의 이사회 경영진이 업무를 적법,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 고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이사	편호범	1982~2007년 감사원 감사관, 과장, 국장, 실장, 감사위원 (2003~2007년 감사원 감사위원) 2004~2011년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자문위원 2007~2015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2009~2017년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2010~2013년 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비상근) 2011~2014년 현대중공업(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015년~현재 수원대 회계학과 석좌교수	회계·재무 전문가
위원	사외이사	왕윤종	1993~20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3~20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2004~2009년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2010~2012년 SK중국경영경제연구소 소장 2013~2015년 SK수펙스 추구협의회 전무 2016~2017년 SK경영경제연구소 고문 2019~2022년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2022~현재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
위원	사외이사	이창재	2010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1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2012년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3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2013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15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5~2017년 제59대 법무부 차관 2017년~2020년 법무법인 아미쿠스 대표변호사 2019년~2021년 삼성생명보험(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020년~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나. 2022년 5월 9일 왕윤종 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하였습니다.

나. 감사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회 개최 및 운영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2조에 의거 최소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각 위원이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 위원회 개최일 전에 각 안건에 대한 사전 보고와 질의 응답을 실시하고, 이들의 추가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개최일 전까지 성실히 지원하여 위원회 안건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지시가 있을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동 규정 제1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설치 현황 및 주요 활동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감사지원팀)를 2018년 6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당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8조에 따라 감사부설기구의 내부감사 인력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8조 및 제20조에 감사부설기구 책임자의 선임 시 감사위원회의 동의 및 2년 이내 이동을 제한함을 규정하고 있고, 내부감사 인력 중 1명은 재무/감사 전문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감사부설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감사 부서 구성 및 주요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명	직원수	직위	근속연수	주요활동내역
감사지원팀	1명	과장	2년	감사위원회 지원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반 활동

또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3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으며,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절하게 수행 하는지를 감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성명	현직	주요경력	선임일	결격요건
유병현	효성화학(주) 지원실 준법지원팀	고려대학교 법학과 '10년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14년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14년 (주)효성 법무팀 입사	2018년 6월 1일	해당사항 없음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부서명	직원수	직위	근속연수	주요활동내역
준법지원팀	1명	대리	2년	준법 점검, 준법 자문 및 준법 교육 실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당사는 감사위원이 감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신규 감사위원에 대해 회사의 사업구조, 경영실적 및 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감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개정 시 주요 사항 교육 진행 및 국내·외 주요 사업장(계열사 포함)을 방문하여 사업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4월에는 회계법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및 내부회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외감법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사항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가 수시로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내용에 따라 적합한 내·외부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회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공시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에게 제공한 교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주요 교육내용	비고
2020.04.29	한영회계법인	편호범, 왕윤종, 이창재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
2021.10.14	삼일회계법인	편호범, 왕윤종	회계개혁 3년, 감사위원회 역할의 변화와 과제	-
2021.10.29	삼일회계법인	편호범, 왕윤종, 이창재	감사위원회 책임과 역할	-

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당사 감사위원회의 보상은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상을 지급하게 되면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별도의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고, 직무 수행의 책임과 역할 등 만을 감안하여 자체 보상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보상 항목은 기본 급여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본 급여 외에 성과급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지급되었던 감사위원회 소속 사외이사의 보수 현황 및 기타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의 보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보수 지급 금액]

구 분	인원수	보수 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비고
감사위원회 위원	3	163백만원	54백만원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1) 감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의 확보 여부

당사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 제36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에 관하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5조에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시행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2018년 6월 1일 제정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동 직무규정에 근거하여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 정관 또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1.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2.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3.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14. 외부감사인의 선정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3항에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감사위원회가 업무집행 시 경

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사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사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의 정보 접근성

당사는 감사위원이 회의 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의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1일 전 상정 안건을 미리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및 제31조에 명문화하였고 그 외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도록 동 규정 제6조 제4항에 명시하여 감사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의 정기적 회의개최 등 활동 내역

감사위원회는 회계 내부 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서류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 및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회계 관련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 평가·보고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로부터 경영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당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상기의 일상 감사 및 절차를 기초로 상법 제447조의4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장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활동을 보고하고 주주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1일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5회,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4회 개최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총 21건의 안건(승인 8건, 보고 13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2021년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차	2021.1.29	3/3	보고사항	제1호 2020년 4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보고	보고
			보고사항	제2호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2차	2021.2.25	3/3	결의사항	제1호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가결
			결의사항	제2호 제3기(2020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감사의 건	가결
			결의사항	제3호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제출의 건	가결
3차	2021.04.30	3/3	보고사항	제1호 2021년 1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보고	보고
			보고사항	제2호 2021년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보고
			보고사항	제3호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의 2021년 회계감사계획 보고	보고
4차	2021.07.30	2/3	보고사항	제1호 2021년 2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보고	보고
			보고사항	제2호 2021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결의사항	제1호 2021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가결
5차	2021.10.29	3/3	보고사항	제1호 2021년 3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보고	보고

[2022년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차	2022.01.26	3/3	보고사항	제1호 2021년 4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보고	보고
			보고사항	제2호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2차	2022.02.24	3/3	결의사항	제1호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가결
			결의사항	제2호 제4기(2021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감사의 건	가결
			결의사항	제3호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제출의 건	가결
3차	2022.03.19	3/3	결의사항	제1호 대표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
4차	2022.04.27	3/3	보고사항	제1호 2022년 1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보고	보고
			보고사항	제2호 2022년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보고
			보고사항	제3호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의 2022년 회계감사계획 보고	보고

당사는 매 감사위원회 종료 후 각 안건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동 의사록에 는 이사회 안건, 경과 요령,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내 보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감사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2021년 93.3%, 2022년 100% 이 며 개별 위원의 출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개별 위원의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비고
	개최일자	2021.01.29	2021.02.25	2021.04.30	2021.07.30	2021.10.29	
사외	편호범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왕윤중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이창재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

[2022년 개별 위원의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비고
	개최일자	2022.01.26	2022.02.24	2022.03.19	2022.04.27	
사외	편호범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왕윤중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이창재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또한,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위원의 출석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위원의 출석률]

구분	성명	재직 기간	출석률(%)			
			최근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최근년도)	2020	2019
사외	편호범	2018.06.01 ~ 현재	100.0	100.0	100.0	100.0
	왕윤중	2018.06.01 ~ 2022.05.09	100.0	100.0	100.0	100.0
	이창재	2018.06.01 ~ 현재	89.5	80.0	85.7	100.0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나. 감사위원회의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기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경영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업무에 관한 당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일상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기 일상 감사 및 절차를 기초로 상법 제447조의4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대표위원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감사위원회 활동을 보고하고 주주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등에 따라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총 9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한 사항은 상기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공시채널(KIND)에서 공시되고 있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2회, 2022년 2회에 걸쳐 감사 이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며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분기별로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핵심감사사항,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상황 등을 매분기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며, 감사위원회가 당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정 시, 각 회계법인에 감사제안 요청서를 발송 후 대면 회의 개최를 통해 계약조건(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독립성, 전문성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 및 감사계약을 체결하며, 선정된 외부감사인과 세부 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일련의 그 과정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0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제안서를 수령 후 공시일정 준수를 위한 감사수행전략의 구체성과 이행 가능성, 제안 보수의 적정성과 함께 전문성, 신뢰성 및 독립성,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삼일회계법인이 타사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아 2020.1.1 ~ 2022.12.31 기간 외부감사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사는 2019년 12월 16일 개최된 감사위원회를 통해 2020년 사업연도부터 2022년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 선임 결정을 승인하고 2020년 2월 14일 외부감사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외감법 제12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 후 감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20년 2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2021년 사업연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외부감사법인은 삼일회계법인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당사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동 기간 동안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및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감사인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삼일회계법인	2021.02.01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 세무, 법무자문	21.2.1 ~ 22.1.31	VND 240백만	-
	2021.03.26	2020년 법인세 세무조정	21.3.2 ~ 21.3.31	16백만원	-
	2021.06.09	해외법인 거래 세무자문	21.3.16 ~ 용역완료시	30백만원	-
	2021.09.24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 이전가격문서화	21.9.24 ~ 용역완료시	VND 723백만	-
	2022.02.28	베트남법인 세무검토	22.2.28 ~ 22.9.30	89백만원	-
	2022.03.26	2021년 법인세 세무조정	22.3.2 ~ 22.3.31	16백만원	-

나.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전문성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여부

상기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보완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평가 등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 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 소통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현황

당사는 회사의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5조에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책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 자체 업무에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진행되었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의 회의 현황 및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의 회의 현황]

개최 시기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비고
2021.01.29	회사 : 감사위원회 위원 3명, CFO 외 1명 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1명	대면회의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 핵심감사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상황	-
2021.04.30	회사 : 감사위원회 위원 3명, CFO 외 1명 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1명	대면회의	- 2021년 회계감사계획	-

개최 시기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비고
2021.07.30	회사 : 감사위원회 위원 2인, CFO 외 1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대면회의	- 감사에서의 유의적발견사항 - 핵심감사사항 - 반기검토경과 - 감사인의 독립성	-
2021.10.29	회사 : 감사위원회 위원 3인, CFO외 1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대면회의	- 감사에서의 유의적발견사항 - 핵심감사사항 - 반기검토경과 - 감사인의 독립성	-
2022.01.26	회사 : 감사위원회 위원 3명, CFO 외 1명 감사인 : 업무수행매니저	대면, 비대면회의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 핵심감사사항 - 연간감사경과 - 감사인의 독립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상황	-
2022.04.27	회사 : 감사위원회 위원 3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대면회의	- 2022년 회계감사계획	-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현황]

사업연도	제출자료	기간 내 제출여부	외부감사인명	제출시기
2020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주총 6 주 전)	삼일회계법인	2021.02.03
2020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주총 4 주 전)	삼일회계법인	2021.02.17
2021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주총 6 주 전)	삼일회계법인	2022.01.28
2021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주총 4 주 전)	삼일회계법인	2022.02.16

비록, 현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대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감사인은 분기별로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핵심감사사항,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상황 등을 매분기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항,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역시 동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할 경우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내역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회적 책임 및 공헌 활동

‘나눔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교육과 나눔을 통해 수혜자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기업’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의 3대 과제인 취약 계층지원, 문화예술후원, 호국보훈을 중심으로 효성이 펼쳐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지구촌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는 “기업인으로서 경영과 투자에 매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효성그룹의 사회공헌 참여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1) 취약 계층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가치의 실천이므로 무엇보다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효성그룹은 2013년부터 경영진을 포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효성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및 장애어린이가족 후원, 취약 계층 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일자리창출 사회적 기업 후원사업(생산설비 교체, Com-bridge 사업 등), 굿월스토어 운영을 통한 장애/저소득층 일자리창출 및 리사이클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인근 저소득층 대상 사랑의 쌀/김장김치 활동부터 마을재생활동, 마포구 저소득층 희망나눔 페스티벌 후원, SNS와 연계한 인근 지역 생필품 지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함께 잘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아 2019년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효성그룹의 사회공헌은 국경을 뛰어 넘습니다. 베트남에서 매년 1천여 명 이상의 주민을 치료하는 해외의료봉사단 파견, 고위험환자 한국 초청 수술, 재난지역 긴급 구호 활동, 저소득국가 미니도서관 설립, 저개발지역 학교 컴퓨터 기증 등을 통해 글로벌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고자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문화 예술 후원

당사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 활동은 소외 계층이 예술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직접 예술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관심과 참여도 활발해 당사의 대표이사는 지정문화유산 보존 등에 힘쓰고 있으며, 당사의 임직원들도 정기적으로 창덕궁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일문화 대축제 및 요요마&실크로드 앙상블 공연 후원 및, 폭력예방 뮤지컬 후원, 우수 연극단체 후원, 장애 예술가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호국 보훈

당사는 사회공헌 분야 중에서도 특히 국가를 위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흥제 선대회장의 산업보국 창업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효성그룹의 최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순국 선열을 기리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묘역 정화, 현충탑 참배 등의 활동을 펼치는 것도 이와 같은 창업 정신 계승의 일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 8월에는 북한의 DMZ 지뢰 매설 도발로 전상을 입은 장병들을 위로하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의 발' 동상 제작을 후원했으며,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와 자매결연을 통해 매년 군부대 발전을 위한 위문금은 물론 '사랑의 독서 카페'에 책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용사의 주거 지원을 위한 나라사랑보금자리 프로젝트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회적 책임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경영가능보고서 발간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문/영문으로 당사 웹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hyosungchemical.com/kr/pr/pr_publications.do)

<별첨 1>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 분	핵심 지표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비고
		○	×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V	· 최근 3년간 주총일 18~21일 전 공고함	-
	② 전자투표 실시 *		V	· 전자투표 미도입	-
	②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V		· 직전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3/18일)에 개최함	-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V	· 배당정책 미통지, 배당실시계획은 매년 통지함	-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V	· 임원 및 임원 후보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및 정관 제29조 유고시 승계절차 마련 및 운영중	-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V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관련 정책 마련 및 운영중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V	· 이사회 의장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음	-
	⑧ 집중투표제 채택		V	·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배제함	-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V		· 관련 정책 수립 시행(세부원칙 4-④에서 기재)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 사실 없음	-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V		· 재직연수 6년 초과한 사외이사 없음	-
감사 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V		· 공시대상기간 동안 연 1회 교육 진행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V		· 감사지원팀 설치 · 운영중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V		· 대표감사위원 1인 충족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V		· 경영진 참석 하에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V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상 중요회의 출석 및 자료 열람, 조사 등 근거규정 有	-

*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2022.3.17) 기준

**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2021.1.1 ~ 2021.12.31)내에 해당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별첨 2> 관련 규정

당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내부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 ① 정관
- ② 이사회운영규정
- ③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⑤ 준법통제기준
- ⑥ 공시정보관리규정
- ⑦ 내부회계관리규정
- ⑧ 보안규정
- ⑨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정
- ⑩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